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제품명

20X EvaGreen™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 |
|---|--------------------------------|
| 가. 제품명 | 20X EvaGreen™ |
|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
| 제품의 권고 용도 | 자료없음 |
|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 이 제품은 연구 개발 전용입니다. |
|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 |
| 회사명 | (주)바이오팩트 |
| 주소 | 34028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로 70(용산동 537) |
| 긴급전화번호 | 042-867-5695 |

2. 유해성·위험성

| | |
|---|------|
| 가. 유해·위험성 분류 | 자료없음 |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 |
| 그림문자 | 자료없음 |
| 신호어 | 자료없음 |
| 유해·위험문구 | 자료없음 |
| 예방조치문구 | |
| 예방 | 자료없음 |
| 대응 | 자료없음 |
| 저장 | 자료없음 |
| 폐기 | 자료없음 |
|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NFPA) | |
| 보건 | 0 |
| 화재 | 0 |
| 반응성 | 0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 | 이명(관용명) | CAS번호 | 함유량(%) |
|-------------------------------------|----------------------------|-----------|--------|
| 물(WATER) | 디수소 산화물(DIHYDROGEN OXIDE); | 7732-18-5 | > 50 |
| The mixture is classified according | | | < 50 |

This product contains no substances that are considered to be hazardous to health at the product concentration.

4. 응급조치요령

| | |
|---------------|--|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눈을 씻어내시오 즉시 의료조치를 취하십시오 |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를 씻어내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격리하십시오 재사용 전에는 옷과 신발을 완전히 씻어내시오 즉시 의료조치를 취하십시오 |
| 다. 흡입했을 때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십시오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십시오 |

- 라. 먹었을 때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즉시 의료조치를 취하십시오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알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아드레날린 제제를 투여하지 마십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소형 화재: 건조모래, 건조화학제, 내알콜포말, 물분무, 일반포말, CO₂ (적절한 소화제)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대형 화재: 물분무/안개, 일반포말 (적절한 소화제)
 고압주수 (부적절한 소화제)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점화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음

-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일부 액체는 현기증, 질식을 유발하는 증기는 발생할 수 있음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하십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십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십시오
 용기가 가열, 폭발하여 비산된 물은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음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십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십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십시오
 오염지역을 환기하십시오
 누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도다니지 마십시오
 분진 형성을 방지하십시오
 적절한 공기(산소 농도 18~23.5%)가 확보될 때까지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공간으로 진입하지 마십시오.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십시오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소량 누출시 다량의 물로 오염지역을 씻어내십시오
 소량 누출시 모래, 비가연성 물질로 흡수하고 용기에 담으십시오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 멀리 도랑을 만드십시오
 청결한 삼으로 누출물을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고 느슨하게 닫은 뒤 용기를 누출지역으로 부터 옮기십시오
 분말 누출시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십시오
 취급 후 철저히 씻으십시오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십시오
 고온에 주의하십시오
 물질 유출시 공기 중 산소 농도를 저하시켜서 밀폐된 장소에서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공기 중 고농도 상태에서 산소 결핍을 일으켜 의식상실 혹은 사망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장소에 들어가기 전 산소 농도를 체크하십시오.
 물질 유출시 액체가 빠르게 증발하면서 공기를 대체함에 따라 밀폐장소에서 있을 때 심각한 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물질 유출시 공기중에서 이 가스의 유해 농도까지 매우 빨리 도달하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뿌리면 공기 입자의 유해 농도까지 매우 빨리 도달할 수 있으므로 뿌리지 마십시오.
 20°C에서 이 물질이 다소 천천히 증발하면서 유해 농도에 도달하므로 20°C 이하로 유지하십시오.
 20°C에서 증발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나, 뿌리면 공기 입자의 유해 농도까지 매우 빨리 도달할 수 있으므로 뿌리지 마십시오.

11. 독성에 관한 정보

| | |
|-------------------------|---|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자료없음 흡입에 의해 신체 흡수 가능 흡입 및 소화기에 의해 신체 흡수 가능 피부, 소화기를 통해, 에어로졸의 흡입에 의해 신체 흡수 가능 증기의 흡입에 의해 신체 흡수 가능 흡입, 피부, 소화기에 의해 신체 흡수 가능 |
|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
| 급성독성 | |
| 경구 | LD50 90000 mg/kg Rat (LD50 > 90 ml/kg (Rat)) |
| 경피 | 자료없음 |
| 흡입 | 자료없음 |
|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해당없음 |
|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해당없음 |
| 호흡기과민성 | 해당없음 |
| 피부과민성 | 해당없음 |
| 발암성 | |
|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없음 |
|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없음 |
| IARC | 자료없음 |
| OSHA | 자료없음 |
| ACGIH | 자료없음 |
| NTP | 자료없음 |
| EU CLP | 자료없음 |
| 생식세포변이원성 | 해당없음 |
| 생식독성 | 해당없음 |
|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해당없음 |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해당없음 |
| 흡인유해성 | 해당없음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
|--------------|---------------|
| 가. 생태독성 | |
| 어류 | 자료없음 |
| 갑각류 | 자료없음 |
| 조류 | 자료없음 |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
| 잔류성 | log Kow -1.38 |
| 분해성 | 자료없음 |
| 다. 생물농축성 | |
| 농축성 | 자료없음 |
| 생분해성 | 자료없음 |
| 라. 토양이동성 | 자료없음 |
| 마. 기타 유해 영향 | 자료없음 |

13. 폐기시 주의사항

| | |
|-------------|---|
| 가. 폐기방법 |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을 및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
| 나.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 나.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 |
|-----------------|--------------------|
| 가. 유엔번호(UN No.) |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
| 나. 적정선적명 | 해당없음 |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해당없음 |

| | |
|---|------|
| 라. 용기등급 | 해당없음 |
| 마. 해양오염물질 | 자료없음 |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 |
| 화재시 비상조치 | 해당없음 |
| 유출시 비상조치 | 해당없음 |

15. 법적규제 현황

| | |
|-----------------------|------|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
|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
|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
|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
| 국내규제 |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
| 국외규제 | |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없음 |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없음 |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없음 |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없음 |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없음 |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없음 |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없음 |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없음 |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없음 |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없음 |

16.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가. 자료의 출처 | |
| NLM | |
| 나. 최초작성일 | 2017-10-23 |
|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
| 개정횟수 | 회 |
| 최종 개정일자 | 0 |
| 라. 기타 | |

○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MSDS를 참고하여 편집, 일부 수정한 자료입니다.